

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호	1773
-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8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안일자 : 2020년 8월 12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(2020년 9월 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실장 황보연)

가. 제안사유

- 서울교통공사는 차량기지 내 여유부지에 택배분류장으로 조성·운영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
-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택배 등 도심생활물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부족하여 우리시 외곽에 관련시설을 조성하는 것임
- 해당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국토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선정 및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지방비 지원분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【출자개요】

- 대상기관 : 서울교통공사

기관현황

- 설립일자 : 2017. 05. 31
- 설립목적 : 지하철 건설·운영(서울지하철 1~8호선) 및 부대사업
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
- 위 치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(용답동)
- 조 직
 - 본 사 : 6본부, 9실, 45처 / 현 업 : 1부문, 2원, 6단, 57센터, 42사업소
- 인 원 : 정원 16,771명 / 현원 16,846명
- 지원시설 : 해당없음

○ 관련법령 : 지방공기업법 제49조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【추경 대상 사업】 : 지축 도시철도차량기지 내 택배분류장 조성

※ 주요사업 : 택배분류장 및 물류처리시설 조성

- 자동분류, 상·하역 데크, 보관창고, 주차장, 관리사무소 등

【출자의 필요성】

○ 비대면 경제활동증가로 전자상거래 등 생활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나,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시의 물류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임

※ 경기도 대비, 우리시의 물류단지 및 창고수는 5% 수준

- 이로 인한 서울시 생활물류는 대부분 경기도 물류시설에서 소형화물차를 이용하여 우리시내로 장거리 배송되고 있음

※ 택배차량 1일 배송거리 7km증가 : 41km('15년) → 48km('19년)

○ 따라서 지속 증가하게 되는 도심생활물류 처리를 위해 서울시 외곽에 택배분류장 등 물류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나, 서울교통공사 재정으로 신속한 추진이 어려워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추경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기 이전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검토의견

- '20년 3월말 기준으로 영업연장 301.4km, 지하철역 278개역, 전동차 3,530량의 도시철도 운영을 통해 하루 약 545만명¹⁾을 수송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하루 약 34억 62백만원 운송수익을 거두고 있으나,

노인·장애인·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등으로 운송원가²⁾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적자³⁾가 발생하여

1) 서울교통공사 수송인원 기준

2) 지하철 일인당 수송원가

('19년 결산기준, 단위:원)

구 분	수송원가	평균운임	부족액	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율
서울교통공사	1,446	945	501	65.3%

서울시에서는 출자금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임

- 동 동의안은 ‘지축 도시철도차량기지내 공동물류센터조성’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(11억 7천만원)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- 서울교통공사는 지축차량기지 내 물류시설를 조성하여 단기적으로는 유통·물류회사가 화물의 분류·집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하여 임대료와 사용료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, 중·장기적으로는 도로와 철도를 연계하고, 보관·배송 등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심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구상하고 있음

※ 참고 : 2020년도 서울시시 지하철 분야 출자금 추경 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구 분(출자금)	'20년 추경예산(안)	기정 예산	증감	산출근거
지축도시철도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조성	1,170,000	0	1,170,000	- 지축차량기지내 공동택배분류장 조성 1개소

※ 총 사업비 39억원 중 국비 30%(11.7억원), 지방비 30%(11.7억원), 교통공사 40%(15.6억원) 분담

※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액 변경 가능

- ‘지축 도시철도차량기지내 공동물류센터조성’ 사업은 총 사업비가 39억원으로 국가, 서울시, 서울교통공사가 30:30:40의 예산을 부담하

※ 수송원가 = 총괄원가(영업비용+자본비용(관리운영권상각비 미포함))/수송인원(승차인원기준)

※ 평균운임 = 운수수입/승차인원

※ 부 족 액 = 수송원가-평균운임

※ 수송원가대비 평균운임을 = 평균운임/수송원가

3) 서울교통공사 '19년 당기순손실 5,865억원

는 매칭사업이고,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도 추경을 통해 예산 지원을 서울교통공사로 통보⁴⁾한바 서울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(11억 7천만원)이 필요하며,

서울교통공사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이므로 소요비용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, 장기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추경으로 출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인정된다 할 수 있음

- 다만, 동의안의 의결은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 여부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심의⁵⁾ 등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적자 및 매칭예산 투입여력, 차량기지 주변 지역주민 민원 등 다각적,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,

서울시는 출자 이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·감독을 통해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

4)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- 42호(2020.7.29.)

- 2020년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예산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요청
: 국비 부담금 11억 7천만원을 초과하여 12억원 교부

5)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(의안번호 1709) : 제출일 2020.8.12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동의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177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교통공사는 차량기지 내 여유부지에 택배분류장으로 조성·운영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
- 나.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택배 등 도심생활물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부족하여 우리시 외곽에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것임
- 다. 해당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국토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선정 및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지방비 지원분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교통공사
- 관련법령 : 지방공기업법 제49조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추정 대상 사업 : 지축 도시철도차량기지 내 택배분류장 조성

※ 주요사업 : 택배분류장 및 물류처리시설 조성

- 자동분류, 상·하역 데크, 보관창고, 주차장, 관리사무소 등

다. 출자의 필요성

- 비대면 경제활동증가로 전자상거래 등 생활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나,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시의 물류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임

※ 경기도 대비, 우리시의 물류단지 및 창고수는 5% 수준

- 이로 인한 서울시 생활물류는 대부분 경기도 물류시설에서 소형화물차를 이용하여 우리시내로 장거리 배송되고 있음

※ 택배차량 1일 배송거리 7km증가 : 41km('15년) → 48km('19년)

- 따라서 지속 증가하게 되는 도심생활물류 처리를 위해 서울시 외곽에 택배분류장 등 물류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나, 서울교통공사 재정으로 신속한 추진이 어려워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추경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: 출자금 예산(안)

※ 작성자 : 택시물류과 물류지원팀 정용우 (☎2133-2332)

붙임

서울교통공사 출자금 추경예산(안)

가. 출자금 : 1,170,000천원 *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액 변경 가능

나. 대 상 : 지축 도시철도차량기지 내 공동물류센터조성

(단위 : 천원)

구 분(출자금)	'20년 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감	산출근거
지축도시철도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조성	1,170,000	0	1,170,000	- 지축차량기지내 공동택배 분류장 조성 1개소

※ 총 사업비 39억원 중 국비 30%(11.7억), 지방비 30%(11.7억), 교통공사 40%(15.6억) 분담